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신설
- 피해보상 심의 시 인과관계 추정 기준 적용

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로 인해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총괄>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형민 (043-719-8350)
		담당자	사무관	조형주 (043-719-8374)
담당 부서 <협조>	의료안전예방국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심사TF	책임자	팀 장	오현경 (043-913-2261)
		담당자	사무관	장윤석 (043-913-2270)

더 아픈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정부 ☎129 / www.e-gen.or.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요 내용

조문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함
제2조	(정의)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함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함
제5조	(국가의 피해보상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함
제6조	(인과관계의 추정) 다음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①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존재, ② 이상반응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③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
제7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질병관리청장 소속 위원회 운영, 의료인 및 약품전문가, 법학·행정학·사회학·면역학 등을 전공한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 재직자, 판사·검사·변호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 추천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제15조	(재심위원회) 질병관리청장 소속 위원회 운영,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
제16조	(위임 및 위탁)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 일부를 시도지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부칙 제4조	(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